

대법원 2019도12572 공직선거법위반 보도자료 - 충북 도의원 하유정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 11. 28.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하유정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하유정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6. 13.)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 3. 25. 보은군 충북 도의원 출마 예정인 자신 및 보은군수 출마 예정인 공동피고인 김상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572 판결)

※ 피고인 하유정 외 공동피고인 김상문이 있으나, 피고인 하유정에 대한 부분만 정리함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¹⁾

- ▣ 피고인 하유정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 3. 25. 보은산악회 행사 관광버스 안에서 탑승하고 있던 보은군 선거구민 약 40명에게 보은군 충북 도의원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보은군수 선거에서 공동피고인 김상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함

※ 참고

- 피고인 하유정은 당시까지 약 8년간 보은군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 도의원으로 당선되었음
- 공동피고인 김상문은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했음

1)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 별지 참조

2. 소송경과

▣ 1심 : 유죄, 벌금 100만원(당선무효형)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과반수(7명 중 5명)가 벌금 100만원 미만인 벌금 90만원으로 양형의견을 제시하였으나(나머지 2명은 벌금 150만원 제시), 1심은 위 양형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

▣ 2심 : 항소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피고인 하유정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인 하유정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거나, 산악회 총무로서 김상문을 산악회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보은군수 출마 예정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 배심원 과반수의 양형의견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는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 원심판결 확정

다. 판단 근거

▣ 피고인 하유정이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인 하유정과 김상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함

- 피고인 하유정이 충북 도의원 선거를 언급하면서 선거공약을 내세우거나 명시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

한다는 김상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김상문을 소개하였으며, 김상문 역시 보은군수 선거를 언급하면서 선거공약과 관련된 발언을 함

■ **배심원 과반수 양형의견과 달리 선고형을 정하였다고 하여 국민참여재판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국민참여재판법은 유무죄에 관해서는 다수결로 평결하게 하는 반면, **양형에 관해서는 단순히 배심원으로 하여금 양형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있으며, 배심원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 국민참여재판법은 양형의견을 집계한 서면을 소송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소수의 양형의견이 사장되지 않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배심원 전원의 양형의견을 참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다수결이 아닌 배심원 전원의 양형의견을 참조할 수 있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이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 450만원) 역시 법관이 양형을 정할 때 존중해야 함

■ (참고) 대법원은 이 판결과 함께 **피고인 하유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9초기933)도 기각하였음**

- 위헌제청 신청이유 : 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②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문자메시지), 제3호(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4.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해석을 수긍한 사례
- 피고인 하유정에 대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됨(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 벌금 100만원)**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조문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사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